



# 국 토 교 통 부



수신 경기도지사(건축디자인과장)  
(경유)

제목 관원 질의 회신(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건축법상 용도)

---

1. 경기도 건축디자인과-9093호(2021.5.4.)와 관련 문서입니다.

2. 질의요지

- 병원(의원) 내 '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'을 설치(기존 공간, 증축)하는 경우 병원(의원)의 부속용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

3. 답변내용

- ?건축법 시행령? 별표 1 제9호에 따라 병원은 의료시설의 하나로서 종합병원, 병원, 치과병원, 한방병원, 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질의의 "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"이 ?의료법? 상 의료기관(병원)에 설치하여야 할 의무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주된 용도에 포함되므로 "의료시설(병원)"의 용도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되나, 병원 내 설치와 관련해서는 「폐기물관리법」 등 관계법령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권자가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.

※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끝.

국토교통부장관



시설사무관 **하에은**      건축정책과장      전결 2021. 5. 25.  
**김성호**

협조자 행정사무관 **이형주**

시행 건축정책과-5736      (2021. 5. 25.)      접수 건축디자인과-10796      (2021. 5. 26.)

우 30103     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(어진동) 국토교통부      / <http://www.molit.go.kr>

전화번호 044-201-4838      팩스번호 044-201-5574      / [hanha1224@molit.go.kr](mailto:hanha1224@molit.go.kr)      / 대국민 공개

청렴한 공직사회, 행복한 국민생활